

『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수민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비정규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 -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(3년마다) 및 세부 계획(매년) 수립
- 근로조건 향상사업(안 제5조)
 - 공공부문 : 실태조사,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, 법률 상담, 취업알선, 비정규직 교육 등 각종 사업 수행
 - 민간부문 :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시 사업 수행
-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충처리 등(안 제6조~제9조)
 - 근로조건 악화·차별에 대한 시정, 관계법령 준수, 고충처리 위한 사례 정기적 점검·분석, 최저임금 준수 등
- 우수기업 우대 및 취업촉진(안 제10조, 11조)
 -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실적에 대한 우대
 - 고용정보의 제공, 직업능력개발 등 안정적인 취업촉진

4. 관련법령

-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,

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예방과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
-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사항과 법령준수, 고충처리 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,
-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현재, 구미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개선을 위하여, 최저임금 및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(2.5%)을 준수하고 있으며,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도 시행하고 있음.

○ 동 조례는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,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고 있는 “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및 구米高용센터”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됨.